

고 시

- 1. 성남 도시관리계획(도로,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자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- 2.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729-333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하고 있습니다.

2025. 1. 20.
성 남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(도로·공공공지) 결정(변경)
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소로	2	265	8	국지 도로	277	소로 2-258호선 심곡동 382-3	중로 3-29 심곡동 145-3	일반도로	경기도고시 제202호 (2005.6.27)	
변경	소로	2	265	8	국지 도로	226	소로 2-258호선 심곡동 382-15	소로 3-652호선 심곡동 145-18			
신설	소로	3	530	6	국지 도로	290	중로 3-29호선 심곡동 343-6	소로 2-264호선 심곡동 358-7	일반도로	-	재결정
신설	소로	3	531	6	국지 도로	52	소로 3-530호선 심곡동 353-3	소로 3-532호선 심곡동 351-7		-	재결정
기정	소로	3	581	6	국지 도로	256	중로 3-29호선 심곡동 329	소로 3-530호선 심곡동 338-4	일반도로	성남시고시 제84호 (2000.9.2)	
변경	소로	3	581	6	국지 도로	256	중로 3-29호선 심곡동 339-6	소로 3-530호선 심곡동 354-1			

②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	기정		변경		
합 계			-	1,055	감)1,055	-		
변경	4	공공공지	심곡동 145-3 일원	712	감)712	-	경기도고시 제202호 (2005.6.27)	
변경	5	공공공지	심곡동 145-19 일원	343	감)343	-		

※ 공공공지 4·5 : 성남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 GB우선해제지구) 결정(변경)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(공공공지 4·5) 폐지(성남시 고시 제2025-6호, 2025. 1. 6.)

③ 결정 사유서

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	비 고
소로 2-265	·일부 선형 및 연장 변경 - 연장 : 277m → 226m	·연장, 시종점 오기 정정 및 교량 설계반영에 따른 일부 선형 변경	
소로 3-530	·도로 신설 - 폭 : 6m, 연장 : 290m	·취락지구 내 도로 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설하고자 함	
소로 3-531	·도로 신설 - 폭 : 6m, 연장 : 52m		
소로 3-581	·중복 부분 제척 및 사·종점 지번 변경	·소로 3-530호선과 일부 중복되는 가각부 제척 및 지번 변경에 따른 사·종점 표기 변경	

2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조서(변경)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도면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3	심곡 지구단위계획구역	심곡동 342 일원	111,953	-	111,953	

②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주 거 지 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111,953	-	111,953	100.0	

③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교통시설(변경)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와 동일

나. 공간시설(변경)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와 동일

④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가. 계획기준(변경없음)

구 분		계 획 내 용	비 고
가 구		·도로를 둘러싸인 일단의 블록을 기준으로 가구 설정	
규모	최소	·단독다세대 : 300㎡ ·근린생활시설·기타용도 : 300㎡ ·연립주택 : 300㎡	
	최대	·단독다세대 : 500㎡ ·근린생활시설·기타용도 : 1,000㎡ ·연립주택 : 1,500㎡ 다만, 고등지구에 한하여 다세대주택 최대면적 1,000㎡	
공동개발 (권장)		·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경우(맹지 해소) ·부정형 필지, 세장비 과다로 토지 효율성이 낮은 필지 ·적정규모 유도 및 정형화를 위한 경우 ·지적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공동개발 변경 및 폐지	

나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(변경)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 (㎡)	위 치	계획내용(공동개발)		비 고
				기정	변경	
-	N가구	11,703	심곡동 343답 일원	382-1, 381-1, 381-2	382-12, 381-1, 381-2	지적분할에 따른 지번변경
				381-3, 381-4, 381-5, 380-4, 산21-5	381-3, 381-4, 381-5, 380-4, 산21-5	
				342, 341-15	342, 341-15	
				341-2, 341-5	341-2, 341-5	
				341-4, 341-7, 341-5, 346-1	341-4, 341-7, 341-5, 346-4	지적분할에 따른 지번변경
				341-8, 341-5	341-8, 341-5	

⑤ 건축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결정
(변경) 조서

○ N가구 건축선: 심곡천(심곡동 145-17번지) 상 건축한계선 삭제 외 변경사항 없음

3. 지형도면 고시도: 도면게재 생략